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20181
등록일자	2016.4.27.
결재일자	2016.4.28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생활보장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		
이철규	정재하	이규형	전결 04/28 김효길		
협조자					

『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』

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계획

개요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
 재정분담금(국비60%, 시비28%, 구비12%) 중 우리구 분담금(구비12%)을
 교육청으로 교부하여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원활히 학업에 전념할 수
 있도록 하고자 함

지원대상 : 1,272명 (초등학생 144명, 중학생 398명, 고등학생 730명)
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·중·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

지원내용

- 입학금·수업료(고등학생, 특성화중학교 포함)
 ⇒ 연도별·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-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

구분	지원대상	지원주기	1인당 지급액	비고
교과서대	고등학생	연1회	131,300원	
부교재비	초·중학생	연1회	39,200원	
학용품비	중·고등학생	연2회	53,300원	학기당 26,650원

- 소요예산** : 155,855천원
- 집행방법** : 시교육청에서 우리구 분담금을 공문으로 교부 요청 및 집행 후 정산
 ※ 2016년 보조금 신청 공문(교육청) 붙임 참조

강 남 구
 (사 회 복 지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, 제43조, 제43조의 2 •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(교육부)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·중·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용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사업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『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』

201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계획

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고,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, 제43조, 제43조의 2
-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(교육부)

II 추진개요

- 지원조건 : 국비60%, 시비28%, 구비12%
- 지급대상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자 및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
-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용 (단위:원)

구분	급여종류	부교재비	학용품비	교과서대	입학금/수업료
초등학생		39,200	-	-	-
중학생		39,200	53,300	-	-
고등학생		-	53,300	131,300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지급횟수		연1회	26,650원씩 연2회	연1회	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지원현황

- 2015년 교육급여 지급 추진실적
 - 1,044명(초297명, 중290명, 고457명), 596,001천원
 - ※ 2014년 추진실적 : 995명(초276명, 중289명, 고430명), 853,849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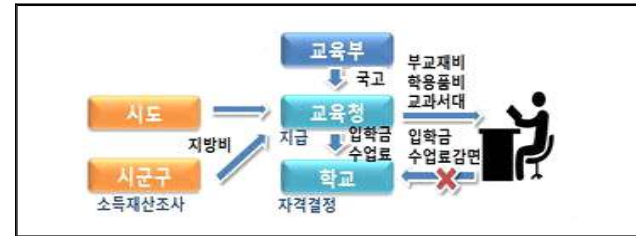
지급대상 : 1,272명 (초등학생 144명, 중학생 398명, 고등학생 730명)

201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

(단위:원)

구분	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2016년 기준중위소득	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
교육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		812,415	1,383,302	1,789,509	2,195,717	2,601,925	3,008,132

III 지원방법



IV 추진계획

- '16. 4월~5월 : 교육청으로 구비 예산 분담분 교부(1차)
- '16. 9월 : 교육부에서 실제 사업 운영에 따른 과부족분을 반영하여 변경 내시 통보
- '16. 10월~11월 : 교육청으로 구비 예산 분담분 교부(2차)
- '16. 9월 : 2017년 교육급여 예산 가내시 통보
- '16. 12월 : 2017년 교육급여 예산 확정내시 통보
- '17. 3월까지 : 교육청에서 교육부시구로 2016년 교육급여 예산 정산

V 행정사항

- 교육청에서 보조금 교부 공문 신청에 의거 지정 계좌로 교육급여 입금 조치

붙임 : 2016년 보조금 신청 공문(교육청) 1부